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2013. 3.

나라살림 가치창조
조달청

< 일러두기 >

◇ 본 안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내서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안내서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조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수록되었으므로 여건이 다른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참고할 경우 이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 업무 추진 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업무 특징에 따라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 본 안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운영상 부득이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법령에서 인용된 제도(인증제도 등)가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은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본 안내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로 의견을 적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과 : TEL : 070-4056-7295, 7227, 7283
FAX : 042) 472-2285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

목 차

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내용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 2
2.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 4
3. 우수조달물품의 관리 ····· 11
4.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 15
5.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 ····· 17
6.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 21

Ⅱ. 신청 참고 사항

1.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인증 제도 안내 ····· 24
2.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41
3. 신청서양식 Download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검색 ····· 47
4.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48

Ⅲ.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 51

Ⅳ. 우수제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135

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내용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

☐ 시행 배경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시행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제도 변천

- 1996. 02. 01 우수제품 추천센터 설치(본청 및 지방청)
- 1997. 06. 30 우수제품 등록창구로 확대개편
- 1998. 10. 09 우수제품 선정심사기준 제정
- 1999. 12. 30 우수제품 선정심사기준 개정
- 2000. 12. 05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규정 신설
- 2000. 12. 29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고시
- 2001. 11. 08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2. 09. 12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4. 03. 23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4. 10. 07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5. 07. 27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5. 09. 27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6. 02. 21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7. 02. 15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 2007. 10. 26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폐지
- 2007. 10. 26「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정
- 2008. 05. 09「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08. 10. 1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09. 06. 16「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10. 04. 30「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10. 12. 30「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11. 10. 27「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부개정
- 2013. 02. 1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시행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호)

☐ 지정대상 및 분야

○ 대 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제품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고시)」에 적합해야 신청가능

○ 지정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건설환경 / 화학섬유 / 기계장치 / 사무기기 / 과기의료 / 기 타

2.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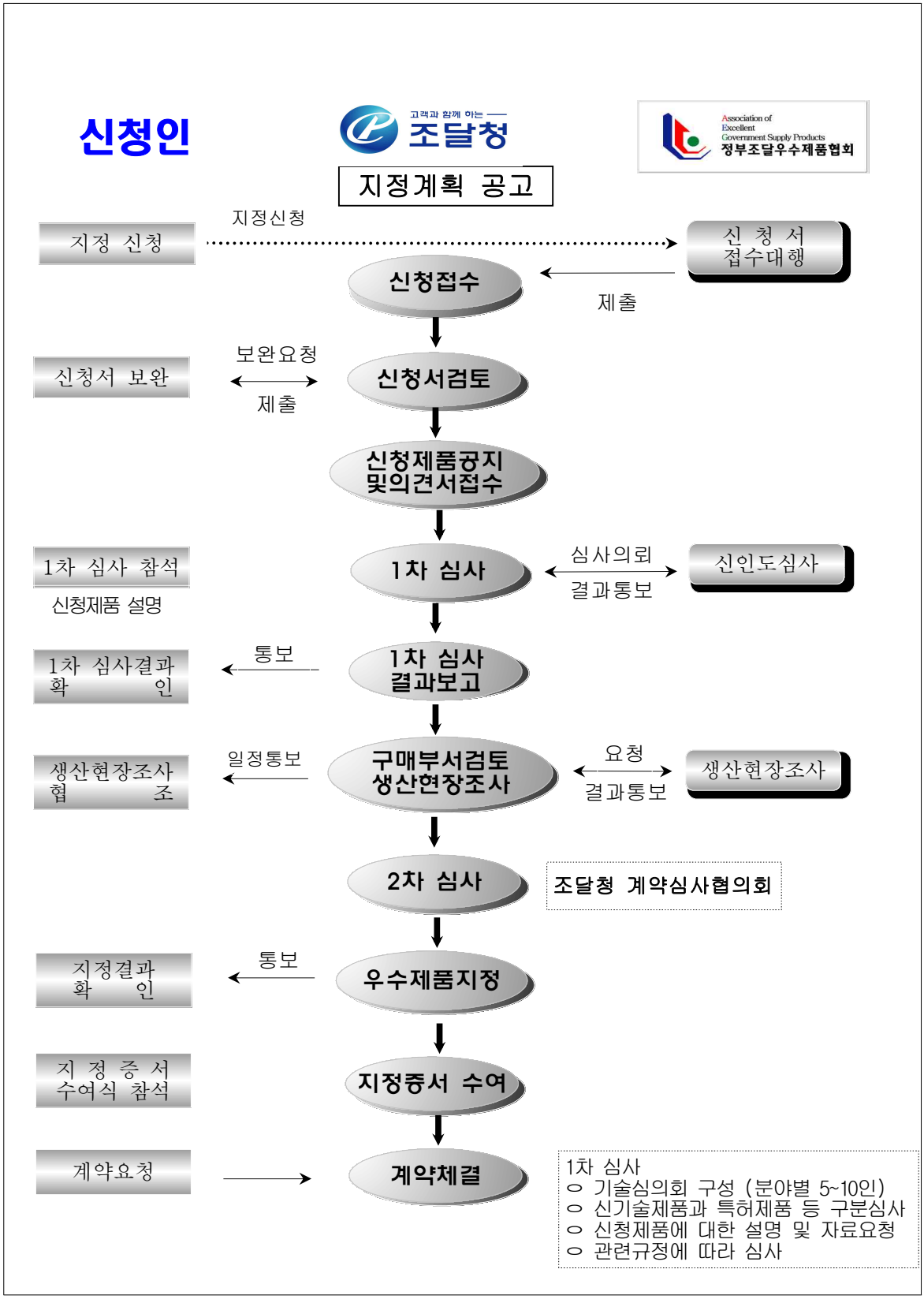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기술인증) 요약

(1) 신제품 【NEP】

・위 인증서로 단독신청 가능함

(2) 신기술 적용제품

NET,전력신기술 【지경부】,건설신기술,교통신기술 【국토해양부】,환경신기술 (환경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소방방재청】

・위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함**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표준원),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GS마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자가품질보증(조달청)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 【국내특허에 한함 : 특허청 등록】

・위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함**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표준원),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GS마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자가품질보증(조달청)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녹색기술 인증 적용제품 【국내특허에 한함 : 특허청 등록】

・위 녹색기술과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함**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표준원),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GS마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자가품질보증(조달청)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 적용되는 기술인증서 유효기간 》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불가(심사제외)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특허・실용신안 등록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체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권자가 등록되어야만 됨 (공동등록시 약정서 제출)
- 기타사항 : 지정계획, 관리규정, 각종서식 등은 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안내⇒ 주요정책⇒우수제품)에 공지하였음

□ 지정대상

○ 지정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과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EPC)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K마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표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 신청제품의 목록화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 함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2.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기술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 제외대상

-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 다만,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지정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정 신청서

○ 제출서류[별표1]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목차(별지 제1호의 4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7서식)	반드시 제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8서식)	
9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 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3	○ 신제품, 신기술 인증서 사본 : NEP, 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품질 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 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 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4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반드시 제출
16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18	일반제품, 가구제품, S/W제품의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7서식)	반드시 제출
19	○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2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증빙 자료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규격서는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현장설치를 요하는 물품 등은 필요 시 설치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7.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위 [별표1]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8.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에서 신청서양식 Download

○ **「우수조달물품 신청서」 접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 심사제외

- 2회 이상 탈락제품으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되어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심사품목 공고 및 의견수렴

- 심사대상품목을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 자료로 활용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지정심사

○ 1차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별로 대학교수,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 연구기관의 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신기술제품 심사: 관리규정 제8조의2 심사제품 >

- 신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정도를 심사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평가한 경우〔별지 제2호의2, 3 서식 참조〕

< 녹색기술제품 심사: 관리규정 제8조의3 심사제품 >

- 녹색기술 및 특허가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정도와 품질인증 심사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평가한 경우〔별지 제2호의4호 서식 참조〕

< 특허제품 등 심사: 관리규정 제8조제4항 심사제품 >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S/W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5호 서식 참조〕
  - ▶ 소프트웨어 제품 〔별지 제2호의6호 서식 참조〕
  - ▶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7호 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정하며, 신인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심사 통과

※ 제8조의2(신기술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로 평가한 경우에 1차심사를 통과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신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 제8조의3(녹색기술인증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 인증 및 기술 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 인증은 심사위원 2/3이상이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 2차 심사

- 심사대상
  ·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8조의3에 의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절차
  · 구매담당부서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
  ·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3. 우수조달물품의 관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 가능)

*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 연장(우수제품모델명 확인되어야 실적인정)**

○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 제출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 검토사항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적용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잔여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간 만료된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성능인증, NEP 등)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연장 여부 결정

☐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추가

○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규격추가신청서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 제출 (접수마감일은 1차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 **다음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규격(모델) 추가를 할 수 있음

-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기술 인증(기술, 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1차 심사에 준하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지정증서 재교부 및 반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1부
5.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반납

- 우수조달물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우수제품 지정을 반납한 업체는 그 지정을 반납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우수조달물품 적용기술 등 유지

○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함

○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이 경우 조달청장은 제2호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음)

＊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고조치

4.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 계약원칙

○ 우수조달물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

☐ 계약방법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제2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계약관리기준

○ 수의계약사유 소멸,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납품 후 하자 발생,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해지 가능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함

5.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

☐ 경고 조치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 변동사항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의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

○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 무효 또는 침해 등의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심사와 품질심사에 각각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 인증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

○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 업체의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

○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단, S/W는 제외

○ 제5조제6호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 우수조달물품의 사후조사 및 관리활동

○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함
-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관리 등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률 11462호, 2012.6.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 제22988호, 2011.6.27)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우수제품클럽” 개장·운영

○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Ⅱ. 신청 참고 사항

1.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인증 제도 안내

☐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인증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내 연장가능)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1~3년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 전력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제품은 3년 이내, 기술은 7년 이내 연장 가능)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 문의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Tel. 02-2110-5475)
- 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 건설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문의처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481~7)

☐ 보건신기술

○ 인증대상

-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
  -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일 것
  - ·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Tel. 02-2023-759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Tel. 02-881-2847)

☐ 환경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문의처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Tel. 02-2110-6727, 667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Tel. 02-380-0462)

▢ 교통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 문의처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391, 6350, 6351)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 문의처

-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 녹색기술인증

○ 정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인증기간 : 2년

○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문의처

- 녹색인증 사무국(Tel. 02-6009-3981)

☐ 특허 및 실용신안

○ 인증대상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 법적 근거

-「특허법」, 「실용신안법」

○ 문의처

- 특허청(Tel. 1544-8080)

☐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정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금속(서울청), 화공(인천청), 전기,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 건축(광주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8919)

☐ 우수재활용인증(GR : Good Recycled)

○ 정 의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 제6호

○ 문의처

- 기술표준원 (Tel. 02-509-7314, 7319)

☐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 정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인증기간 : 2년(재약정기간: 2년)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380-0412~9)

☐ K마크 인증 제품

○ 정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 인증기간 : 1년(1년 단위로 재인증 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 2항 1호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Tel. 02-860-135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 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 인증기간 : 3년(3년 연장)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Tel. 031-260-4241~5)

☐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 내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SW 전 분야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분당)031-724-0191, (서울)02-2132-4040)

☐ Q마크

○ 내용

- 품질보증(Q마크) 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그별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31-428-563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심사팀 : 02-2164-015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2-3415-8770)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3, 제30조2, 제30조4

☐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내용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Tel. 02-6009-4602)

○ 시험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기관

☐ 「건」마크

○ 내용

- 건자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 하고 품질을 보증

○ 법적근거 : 품질보증운영규정 및 지침

○ 인증기간 : 1년(연장 가능)

○ 문의처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Tel. 02-3415-8770~6)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내용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 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지정기간 : 3년

○ 문의처 : 노동부 노사발전재단(Tel. 02-6670-3922)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 내용

- 국내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 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접수받아 선정 전시

○ 법적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Tel.031-780-2101~4)

☐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 내용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 대한민국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 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 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 신청 대상

- 일반SW부문 : 일반사무용, 산업·과학용, 개발용/통신·유틸리티 등 관련 SW
- 멀티미디어SW부문 : 교육·문화용 및 오락, 게임, 에듀테인먼트 등 관련 SW
- 임베디드SW부문 : 데이터 처리장치, 통신장비, 정보가전, 의료기기, 항공제어관련 등

○ 신청 기간 &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년 12월 초에 시상(연별 3개 제품)

○ 문의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사무국(Tel. 02-2132-0732)

☐ 디지털콘텐츠대상 제품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마케팅지원팀(Tel. 02-2141-5530)

☐ 우수발명품

○ 내용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등) 및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Tel. 042-481-517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8)

☐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 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 (Tel. 031-260-4247)

☐ PIN-UP상(PIN UP Design Awards)

○ 출품 대상 및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
- 심사제외대상

1. 이전에 본 상에 출품되었던 작품
2. 타인의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3. 국내외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거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 문의처 :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PIN UP Design Awards"사무국 (Tel. 031-702-2651)

☐ GH(Goods of Health) 인증

○ 내용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문의처 : 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855)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 내용

- 「의료기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약청이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기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문의처 :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Tel. 043-719-3805)

☐ 목재품질인증

○ 내용

-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생산과(Tel. 042-481-4204)

☐ 자가품질보증

○ 내용

-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Tel. 070-4056-8122)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품명별 적용일정표

2010년도 제1차「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8 : 대기전력, 9～14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5～17 : 폐지사용율 기준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최초 (A)	강화 (B)	'10년 (2.1일/8.1일)	'11년 (1.1일/7.1일)	'12년	'13년	
1. 컴퓨터	1W이하	0.5W이하	대기업(A)	중기(A)		B	2W이하
2. 노트북	1W이하	0.5W이하	A	B			1W이하
3. 모니터	1W이하	0.5W이하	A	B			1W이하
4. 프린터	0.5W이하	0.1W이하	A	B			1W이하
5. 복사기	0.5W이하	0.1W이하	A	B			1W이하
6. 팩시밀리	0.5W이하						2W이하
7. 텔레비전	0.5W이하						1W이하
8. 비디오	1W이하	0.5W이하	대기업(A) 중기(A)		B		1W이하
9. 세탁기	1등급						1～5등급
10. 전기냉장고	1등급						1～5등급
11. 전기냉방기	1등급			대기업 중기			1～5등급
12. 공기청정기	1등급						1～5등급
13. 전기냉난방기	1등급			대기업 중기			1～5등급
14. 식기세척기	1등급						1～5등급
15. 인쇄용지	50%이상						30%이상
16. 화장지	100%						50%이상
17. 봉투	70%이상(행정봉투) 20%이상(우편봉투)						70%이상 20%이상
계			14개	3개 (강화 4개)	(강화 1개)	(강화 1개)	계

2010년도 제2차「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3 : 대기전력, 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9 : 신재생·에너지고효율, 10~14 : 친환경·재활용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10년(9.1)	'11년	'12년	'13년	
1. 비데	난방15W이하 오프 2W이하	- 10W이하 - 0.5W이하			- 15W이하 - 2W이하
2. 스캐너	1W이하	0.5W이하			1W이하
3. 비디오프로젝터		5W이하			5W이하
4. 자동차		소형 1등급	중형 2등급	대형·승합 3등급	1~5등급
5. 태양열집열기	* 평판형만 예로 제시	투과흡수율 70%이상 열손실율 6.0이하 또는 집열량 2,200kcal 이상	- 72%이상 - 5.0 이하 - 2,500kcal 이상		- 68%이상 - 6.0 이하 - 2,008kcal 이상
6. LED램프		광효율 50-60lm/W이상			50-60lm/W이상
7. LED등기구		광효율 55-75lm/W이상			55-75lm/W이상
8. LED보안등기구		광효율 70lm/W이상	광효율 75lm/W이상		70lm/W이상
9.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열효율 (1T이하)84%이상, (10T이하)85%이상,(10T초과)86%이상			
10.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GR, 환경표지 성능인증	*순환골재 25% 이상			(왼쪽과 같음)
11.재활용 콘크리트블록	GR 환경표지 성능인증	*순환골재 50이상*			(왼쪽과 같음)
12.고무바닥재	폐고무 재활용 50%, 중금속 + VOCs 등 유해화학물질 검출량 기준				(왼쪽과 같음)
13.합성목재		목분 등 50% 이상, 포름알데히드 + VOCs 검출량 기준			(왼쪽과 같음)
14.재활용전자 복사용지		폐지활용률 40%이상, 회분 10 이하			(왼쪽과 같음)
시행제품(14개)	5개	9개			

* 관련 국내인증규정
-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9호)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9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0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02호)
-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97호)

(2011년) 제3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5 : 에너지효율등급, 6~10 : 고효율에너지, 11~12 : 유해물질, 13 : 재활용 14~19 : 환경마크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11년(9.1)	'12년	'13년	'14년	
1.진공청소기	4등급	3등급(대기업,중소기업)	2등급 (대기업)	2등급 (중소기업)	효율등급
2.전기냉온수기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
3.선풍기	3등급				"
4.식기건조기	3등급	2등급			"
5.전기냉동고	3등급(대기업) 4등급(중소기업)	2등급(대기업) 3등급(중소기업)	1등급(대기업) 2등급(중소기업)	1등급	"
6.무정전전원장치		C등급(KS수준)	B등급(KS이상)		고효율기자재
7.태양광가로등	다결정 13%이상 단결정 16%이상	다결정 14%이상 단결정 17%이상	다결정 15%이상 단결정 18%이상		-
8.메탈할라이드램프		150W (90lm/W) 200W (95lm/W) 350W (100lm/W)			고효율기자재
9.열회수환기장치		효율 냉(45%),난(70%) 에너지냉(8%),난(15%)			"
10흡수식냉온수기		성적계수1.2(대기업)	성적계수1.2(중소기업)		"
11시멘트	6가크롬 20mg/kg이하				-
12.플로어링보드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KS, 환경마크
13.재활용 고무 수목보호판	폐고무50%이상				우수재활용
14.학생용책상및의자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KS, 환경마크
15.학생용사물함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
16.청소도구함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
17.신발장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
18.컴퓨터책상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
19.실험대	폼알데하이드 (A)0.12,(B)0.5mg/l이하				"
시행제품(19개)	15개	9개	6개	3개	

(2012년) 제4차「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 : 에너지효율등급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12년(6.1)	'13년	'14년	'15년	
1.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2등급(대기업) 5등급(중소기업)	1등급(대기업) 2등급(중소기업)	1등급(대기업) 1등급(중소기업)	1등급(대기업) 1등급(중소기업)	효율등급
시행제품(1개)	1개	1개	1개	1개	

(2012년) 제5차「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 : 에너지효율등급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12년(7.1)	'13년(1.1)	'14년	'15년	
1.복합기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기전력저감
2..자동절전제어장치	-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기전력저감
3.셋톱박스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기전력저감
4.전자레인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기전력저감
5.유무선전화기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기전력저감
6.서버	-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기전력저감
시행제품(6개)	4개	2개			

(2012년) 제6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1~4 : 환경표지, 5~8 : 수도용위생안전기준, 9~16 : 효율등급, 17 : 유해물질, 18 : 우수재활용>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제품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13년(1.1)	'13년(7.1)	'14년(1.1)	'14년(7.1)	
1.인조잔디	KS규격		환경표지 유해원소기준		KS, 환경마크
2.탄성포장재	KS규격		환경표지 유해원소기준		KS, 환경마크
3.제설제	환경표지인증				환경마크
4.창호	3등급			2등급	효율등급, 환경마크
5.수도계량기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6.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7.수도용PE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8.수처리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9.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타이어	효율등급 승용차('12.12.1)	효율등급 트럭('13.12.1) 최저소비효율 승용차('13.12.1)		최저소비효율 소 형 트 럭 ('14.12.1)	자동차타이어 에너지효율측정및등급기준
10.김치냉장고	1등급(대기업) 2등급(중소기업)		1등급 (대기업,중소기업)		효율등급
11.제습기		3등급(대기업,중소기업)		2등급(대,중소기업) '15.7.1부터는 1등급(대,중소기업)	효율등급
12.변압기	최저소비효율기준				효율등급
13.온풍난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				효율등급
14.전기스토브	최대대기전력 5W이하		최대대기전력 3W이하		대기전력
15.방열기 (전기라디에이터)	최대대기전력 5W이하		최대대기전력 3W이하		대기전력
16.형광램프용안정기	최저소비효율기준				효율등급
17.OA칸막이	포름알데히드 등 (A)0.12,(B)0.5mg/l이하				환경마크
18.재활용점토벽돌	재활용 사용률				우수재활용
시행제품(18개)	17개	2개	5개	3개	

2.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작성 요령

☐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별표 1 (제4조제2항)］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목차(별지 제1호의 4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7서식)	반드시 제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8서식)	
9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 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3	○ 신제품, 신기술 인증서 사본 : NEP, 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품질 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 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 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4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반드시 제출
16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18	일반제품, 가구제품, S/W제품의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7서식)	반드시 제출
19	○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2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증빙 자료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규격서는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현장설치를 요하는 물품 등은 필요 시 설치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7.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위 [별표1]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8.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작성요령

1. 별지 제1호의 1서식(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가. 기존에 우수제품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필히 기재

2. 별지 제1호의 2서식(신뢰 서약서)

가.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3. 별지 제1호의 3서식(우수제품지정신청서)

가. 품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록

예) 냉장고, 건조기, 현미경, 책상, 의자 등

나. 규격(모델)번호

○ 시장에 유통되는 모델(규격)번호를 기록하되 물품목록번호와 모델명을 기록하고 규격은 규격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예) SV-254, T1234,

○ 신청제품에 대한 모델(규격)번호가 많을 경우 물품목록번호(16자리)와 모델명을 기재한 별지 신청제품목록[별지 제1호의5서식]을 제출

다. 신청분야 : 제품의 분야를 기록

※ 신청제품에 대한 분류는 조달청에서 재분류 할 수 있음

라. 주소는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물명, 층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마. 전화번호는 자동안내시스템 경우 담당 부서의 교환번호까지 기재.

바. 신청인은 업체 대표가 되며, 법인 인감을 날인

사.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

4. 별지 제1호의 6서식(제품 설명서)

가. 제품명 및 규격(모델)은 제1호의3서식에서와 같이 기재

나. 경쟁제품과의 비교는 기술 및 품질인증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다. 각 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5. 별지 제1호의 7서식(주요구성품별 단가표)

가. 시스템 제품에 한하여 작성

- CCTV, 방송장비, 자동제어, 태양발전설비, 전력제어시스템 등

6. 별지 제1호의 8서식(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가. 업체의 선택사항

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다.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함

7. 별지 제1호의 9서식(기술 설명서)

가. 5항은 해외진출실적[별지 1호의 16호서식]의 합계금액을 기재

나. 7항 기업유형에서 해당 기업유형을 체크하고 관련 확인서 제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고용사실 증명서류 등)

다. **11항 '타인 산업재산권과의 관계'**와 **12항 '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지정 이후에도 해당사항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경우 우수제품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라. **12항 '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서류 예시>

-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 ㅇ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인증서(전자파적합등록) 사본
- ㅇ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서(기술검토서) 사본
- ㅇ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기제조등록필증 사본 등

8. 별지 제1호의 10서식(등록사항 설명서)

가.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기록

나. 신청제품에 적용된 청구항(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재

9. 별지 제1호의 11서식(제품 사진)

가. 신청제품의 실물 사진으로서 반드시 첨부

나.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1매로 제품의 형상을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장 제출 가능

10.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품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

가. 유효기술 및 품질인증

○ 기술, 품질 등에 대한 권리와 등록사항은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에게 있어야 함

○ 신기술, 신제품 : 유효한 인증으로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인증

- 제출서류 : 인증서 사본, 기술평가서 등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단, 실용신안은 기술평가 등록 유지되어있어야 유효 함.

- 제출서류 : 등록증 사본, 등록원부**(최근 1월이내 발급)**, 등록공보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90일 이상인 품질인증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품질인증(인정)서 사본, 평가보고서

※ 신제품, 신기술, 품질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반드시 기재 및 제출.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

11. 별지 제1호의 13서식(제품 규격서)

※ 우수조달물품 지정범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요함

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규격(모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있어서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검토하여 기술인증의 적용정도(핵심, 중요, 일반, 주변 등)를 평가하오니 이 점 특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는 「우수조달물품규격서」로, 또한 제3자 단가계약이 추진될 경우에는 본 규격서를 기준하게 되오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범위는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에 한함)**

라. 규격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특성(개요)은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 제품의 규격은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
- 검사 및 시험은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하자보증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
- 신청제품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및 결과치를 규격서에 반영
  - 규격서 문구 중 해당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시험기관명을 기재
- **신청한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인증 등)에 대하여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 또는 범위를 규격서에 반영**
  - 규격서 문구 중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이 적용된 기술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기술인증명을 기재

마. 신청제품의 규격(모델)서 작성에 필요한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

※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제외 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12. 별지 제1호의 14서식(기술·성능비교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성능인증은 수반된 기술 반드시 포함)을 모두 기재

나.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다. 주요구성은 주요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 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

라.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마.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바. CD에 파일명을 회사명.hwp로 하여 별도 제출

13. 별지 제1호의 15서식(약정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반드시 제출

* 단, 공동권리권자가 대기업인 경우, 신청인의 약정서 제출의무 면제

14. 별지 제1호의 16서식(해외진출실적)

가.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을 기재하고 표의 각 항목에 대해 수출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우수조달물품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모델명 등 확인)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나.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시 해외 수출제품 실적으로 인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 신용장, 수출신고서 등에 증빙제품 품명, 모델번호 등의 일치여부로 판단

15. 별지 제1호의 16서식(신인도심사 자기평가표)

가. 각 항목 별로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자기평점 기재

나. ①②③의 합계는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되며, 나머지 서식은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과 무관한 서류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신청서 양식 Download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검색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접속⇒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 클릭

- 우수제품 中 '각종서식' 클릭

- '신청서양식' Download 및 작성

4.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설립목적

○ 우수조달물품업체 상호간의 기술교류,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추진

○ 우수조달물품의 홍보, 국내외 시장개척 등에 공동참여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회 역할 활성화 도모

☐ 우수조달물품 업무위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요업무

○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의 계약요청, 계약추천 및 계약관리, 지정증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의 계약,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전 사전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

○ 우수제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업체의 실태조사

○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가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

○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조달우수제품클럽 제도설명

○ **"조달우수제품클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돕는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해 조달청장의 위탁에 따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우수제품 전용쇼핑몰**로써 공공기관과의 주문거래는 물론이고, 회사소개, 우수제품 소개, 납품 및 시공현장 소개, 기타 제품관련의 부가적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

○ 우수제품클럽에서는 우수제품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위해 우수제품 전문 쇼핑몰과 함께 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등록 할 수 있는 상품 홍보콘텐츠, 전자카탈로그(e-book)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조달우수제품클럽의 회원 가입은 협회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가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협회가 클럽회원 가입자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며 가입과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이용은 협회가 운용하는 '정부조달우수제품클럽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1항*에 의거 조달우수제품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으니 조달우수제품 인증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협회 회원 및 우수제품클럽에 가입하여 업체 홍보와 판로개척의 기회를 주고자 제도시행

<가입절차안내>

1)조달우수제품클럽 접속
2)로그인 (조달청 종합쇼핑몰 로그인 인증서와 동일)
3)회원가입신청
4)가입자격 부합여부 확인 후 승인

★ 클럽이용매뉴얼보기
http://www.pps.go.kr/ebook/xclub_manual_company.htm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www.jungwoo.or.kr)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 4층 401호 Tel (02)521-0014, Fax (02)521-0016

Ⅲ.「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규정 개정 요약

1. 심사기준 개선

□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각종 인증에 부여되는 점수 체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기업에 신인도 점수 부여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던 점수를 인증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심사)

○ 신인도 관련 인증 종류 및 배점 축소

- 신인도배점 : 10점 → 8점(기술심사배점 : 50점 → 52점)

- 우리 청의 '기술수준에 따른 인증분류', 인증 활용도, 인증 성질 등을 고려하여 KS 등 7개 인증 이외에 13개 인증 삭제 및 전략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 관련인증 및 녹색산업 관련인증 등 3개 인증 추가

○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①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우수기업(2점) 및 ②신규채용 우수기업(2점) → 신인도 추가

2. 우수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제고

□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기본 품질인증 추가

□ 자가품질보증업체의 물품을 품질인증 항목에 반영

4. 경고로 인한 제재 완화

□ 경고 횟수에 따라 단계적 불이익 부여

	현행	개정
경고 1회	지정기간 연장 불허	경고 및 이후 제재사항 안내
경고 2회	지정취소	지정기간 연장 불허
경고 3회		지정취소

* 단, 경고 사유에 따라 거래정지는 별도로 가능

5.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취소 사유 보완

□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취소 → 회생절차 종료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6. 지정취소 후 재신청 제한 범위 완화

① 업체의 부도 등이 확인된 경우(7호)

→ 영업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재신청 허용

②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12호)

→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해당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신청 금지

③ 우수제품 지정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13호)

→ 요건 구비 후 재신청 허용

7. 공동권리자에 대한 약정서 제출의무 완화

□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신청인의 약정서 제출 의무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8- 3호(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2호(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4호(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 19호(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 35호(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1- 14호(2011. 10. 27)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3호(2013. 2.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신제품(NEP)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녹색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7. "품질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8.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9. "수반된 기술"이란 제3조제1항의 인증으로서 해당하는 인증의 종합평가서에 명기된 기술 인증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① 우수제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2호의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

감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4.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 제품(EPC),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기술심의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③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장 지정

제4조(지정신청)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5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의 우수제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신청제품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신제품 인증·기술 인증(녹색기술 인증 포함) 내용 및 품질인증 기준을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3조제1항제4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⑪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별지 제1호의15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제6조(신청제품의 의견수렴) 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제품 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기술심의회에서 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③ 1차 심사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적용된 정도를 평가하는 심사(이하 “적용기술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심사(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신청제품은 신인도심사 점수를 합하여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제4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우수제품으로서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⑦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1차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신기술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신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3(녹색기술인증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 인증 및 기술 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 인증은 심사위원 2/3이상이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9조(2차 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2차 심사 대상제품에 대하여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8 서식] 및 [별지 제2호의9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협회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미 조달계약 등으로 생산현장 실태를 파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1차 심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심의사항)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2차 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차 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탈락,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호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기간)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3조제1호의 신제품(NEP) 및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기간 만료

일 전까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적용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잔여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간 만료된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성능인증, NEP 등)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라 1차 심사

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로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 심사, 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기술심의회의 심사 (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우수제품 이의신청심사서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계약

제16조(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을 검토한다.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기간) ①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③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18조의2(계약기간 중 품목추가) 제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제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품질확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홍보

제20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지정·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등) 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심사와 품질심사에 각각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 인증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7.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한다.
10.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단, S/W는 제외한다.
13. 제5조제6호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6호 내지 제13호에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사유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일부터 1년간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조사 등) ①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 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계약

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2.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③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한다.

⑤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제23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

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반납한 업체는 그 지정을 반납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우수제품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제품의 계약요청, 계약추천 및 계약관리, 지정증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제품의 계약,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전 사전 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
5. 우수제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업체의 실태조사
6.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가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우수제품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8.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
11.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제28조(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2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 2007-16호,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선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2007.2.1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3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12호, 2008.10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9- 4호, 2009. 6 .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0-19호,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단,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2010-35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7조 2호에 의하여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는 서울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1. 1부터, 경기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7. 1부터, 그 외 지역은 2012. 1. 1부터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11-14호, 201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

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3호, 2013.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목차(별지 제1호의 4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7서식)	반드시 제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8서식)	
9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 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3	○ 신제품, 신기술 인증서 사본 : NEP, 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품질 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 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 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4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반드시 제출
16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18	일반제품, 가구제품, S/W제품의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7서식)	반드시 제출
19	○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2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증빙 자료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규격서는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현장설치를 요하는 물품 등은 필요 시 설치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7.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위 [별표1]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8.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서식 (제4조제2항)]

201○년도 제○회 － (　　)호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최초 지정신청 (　)	규격추가 지정신청 (　)	지정기간 연장신청 (　)
인증번호	－	제○○○호	제○○○호

기존 우수제품 현황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제품명	지정기간	규격명(규격수)

신청업체명 :

[별지 제1호의 2서식 (제4조제2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만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 3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신청서

<table>
<tr><td>품 명</td><td colspan="2">(한글)</td><td></td><td>(영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규격 및
물품목록
번호</td><td>규격명
(모델명)</td><td colspan="5"></td></tr>
<tr><td>목록번호
(16자리)</td><td colspan="5"></td></tr>
<tr><td>신청분야
(해당란○표)</td><td colspan="6">1. 전기전자 2. 정보통신 3. 기계장치 4. 건설환경 5. 화학섬유 6. 사무기기
7. 의료장비 8. 과학기기 9. 기 타</td></tr>
<tr><td rowspan="2">회 사 명</td><td colspan="2">(한글)</td><td rowspan="2">대표자</td><td>(한글)</td><td colspan="2">성별</td></tr>
<tr><td colspan="2">(영문)</td><td>(영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주 소</td><td colspan="6">본사 : (㉮ -)</td></tr>
<tr><td colspan="6">공장 : (㉮ -)</td></tr>
<tr><td colspan="6">국문홈페이지 : http://</td></tr>
<tr><td colspan="6">외국어홈페이지 : http://</td></tr>
<tr><td>기업형태
(해당란표시)</td><td colspan="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td></tr>
<tr><td>주생산품목</td><td colspan="2"></td><td>업 종</td><td colspan="2"></td></tr>
<tr><td>상 시
종업원수</td><td colspan="2"></td><td>자본금
(백만원)</td><td colspan="2"></td></tr>
<tr><td>총자산(백만원)</td><td colspan="2"></td><td>창업년도</td><td colspan="2"></td></tr>
<tr><td>사 업 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법인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연 락 처</td><td>부 서</td><td></td><td>연락전화</td><td colspan="2"></td></tr>
<tr><td>직 위</td><td></td><td>FAX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td><td>e-Mail</td><td colspan="2"></td></tr>
</table>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주)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규격(모델)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도 가능
※ 붙임 서류 : 뒤쪽 구비서류 명세서 참조
주)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지능형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담당과 : 조달청 물품관리과)

[별지 제1호의 4서식 (제4조제2항)]

[목 차]

1-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표지
1-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
1-3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
1-4 목 차 (별지 제1호의 4서식) ····· ○
1-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 ○
1-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 ○
1-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별지 제1호의 7서식) ····· ○
1-8. 경제성효과(LCC)원가분석총괄표(별지 제1호의 8서식) ····· ○
1-9. 경제성효과(LCC)원가계산서 ····· ○
1-10.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 ○
1-11.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 ○
1-12.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
1-13.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
1-14.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 ○
1-15. 품질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 ○
1-16.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
1-17.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1-18.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 ○
1-19. 기술·성능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 ○
1-20.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 ○
1-21. 해외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 ○
1-22. 신인도 자기평가표(별지 제1호의 17서식) ····· ○
1-23. 신인도 증빙자료 ····· ○
2. 신청기업 정보 ····· ○
2-1. 사업자등록증 ····· ○
2-2. 직접생산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 ○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
2-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2-5.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등 ····· ○
2-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별지 제1호의 5서식 (제4조제2항)]

신청제품 목록

번호	물품목록번호	규격명(모델명)	번호	물품목록번호	규격명(모델명)
1			41		
2			42		
3			43		
4			44		
5			45		
6			46		
7			47		
8			48		
9			49		
10			50		
12			…		
13			…		
14			100		
15			…		
16			…		
17			200		
18			…		
19			…		
20			3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품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제4조제2항)]

제 품 설 명 서

<table>
<tr><td>제품 명칭</td><td colspan="2"></td><td>규격 모델번호</td><td></td></tr>
<tr><td>1. 제품의 용도</td><td colspan="4"></td></tr>
<tr><td>2. 제품의 기능</td><td colspan="4"></td></tr>
<tr><td>3. 경쟁제품과의 비교</td><td colspan="4">1) 국내·외 경쟁제품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2) 경쟁제품 및 업체명
○ 제품명(브랜드 명) :
○ 업체명 :

3) 우수 경쟁제품과의 차이점(우수성 또는 차별성)
(* 주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4) 가격 비교
○ 신청제품 단가 : (원)
○ 비교제품 단가 : (원)</td></tr>
<tr><td>4. 예상 공급처 (수요기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5. 제품의 국내 시장규모</td><td>공공기관(연간)</td><td colspan="3">₩ 천원</td></tr>
<tr><td>민간부문(연간)</td><td colspan="3">₩ 천원</td></tr>
</table>

[별지 제1호의 7서식(제4조제2항)

주요구성품별 단가표

(시스템 장비에 한함)

○ 품 명 :

○ 업체명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성품별	모델	규격	단 가	비 고
구성품 1				
구성품 2				
구성품 3				
구성품 4				
구성품 5				
구성품 6				
· · · ·			· · · ·	· · · ·
합 계				

○ 제출된 단가는 우수제품 지정 심사 및 계약시에 가격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1호의 8서식 (제4조제2항)]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 품 명 :

○ 업체명 :

(단위 : 원(부가세 포함)/개)

구 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대비(%) (A/B)	비고
모 델 명					
규 격					
제품수명(내용연수)		(년)	(년)		
원가 항목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합계				
평 가	경제적 가치에 의한 비교분석 및 비교제품 대비 몇% 향상 또는 하락을 기술				
원가계산용역기관 : 년 월 일 (인)					

○ 경제성효과 LCC(life cycle cost) 원가분석총괄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제1호의8서식)」와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시에는 가점 부여(제출여부는 선택사항임).

○ 경제성효과은 취득원가+사용원가±폐기원가로 구성됨

※ 원가계산서 : 별첨

[별지 제1호의 9서식 (제4조제2항)]

기 술 설 명 서

1. 제품의 구분 (해당번호 ✔ 표)	①완제품 ②제품의 부분품
2. 기술인증 (해당번호 ✔ 표)	①NEP ②NET ③환경신기술 ④건설신기술 ⑤전력신기술 ⑥보건신기술 ⑦교통신기술 ⑧자연재해저감신기술 ⑨녹색기술인증 [*기술인증 및 종합평가보고서 첨부] ⑩특허 ⑪실용신안 ⑫디자인[※ 특허증, 원부, 공보 첨부]
3. 품질인증 (해당번호 ✔ 표)	①성능인증 ② GR ③환경마크 ④K마크 ⑤ GS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종합평가서 사본 첨부) ⑦자가품질보증제품(※ 지정신청서, 지정증서, 현장심사보고서 등 첨부)
4. 제품의 국산화률	
5. 제품의 최근 1년간 수출량	○ 연간 생산량 : ○ 최근 1년간 수출량 :
6. 예상 수요량	○ 연간 국내 수요량 : (신청제품의 시장점유율 : %)
7. 기업유형 (해당번호 ✔ 표)	①중소기업 ②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③여성기업 ④노사문화 우수기업 ⑤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⑥신규채용 우수기업 (※ 확인서 첨부)
8. 제품의 안전도	
9. 제품의 고장률	
10.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11. 타인의 산업 재산권과의 관계	※ 제품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내용, 현재 상태, 향후 전망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 첨부. 분쟁이 있음에도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조치
12.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 인증사항 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 상태,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별지 제1호의 10서식(제4조제2항)]

등록사항설명서

(신청제품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제품인 경우 작성)

1. 등록번호		2. 등 록 일	
3.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대상 물품			
4. 발명·고안·의장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5. 신청제품에 적용한 내용(적용 부분 명칭, 적용 정도 등을 기술)			
6. 특허(실용)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산업재산권 분쟁(분쟁예상) 여부 (* 특허관련 소송, 등록무효심판 청구 등)			
7. 특허(실용)등록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는지의 여부			

[별지 제1호의 11서식(제4조제2항)]

제 품 사 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3조제1항, 제4제2항, 제4조제6항)]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

기술(품질)인증종류 (예; NEP, 특허등)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 고안 명칭)/품명(품목)	인증(지정)기간/ 등록일	발행기관	비 고

주)신제품, 신기술, 품질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반드시 기재 및 제출.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한다.

-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인증서, 원부, 공보서 제출(신제품, 신기술에 포함된 특허, 실용신안 등 반드시 포함)

[별지 제1호의 13서식(제4조제2항, 제4조제9항)]

제 품 규 격 서

1. ○ ○(물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 기재요령

①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② (제품명)의 규격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③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 제외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 14서식(제4조제2항, 제4조제5항)]

기술·성능 비교표

우수제품명 (비교 제품명)		
지정번호 (비교회사명 및 전화번호)		
기 지정제품 (자사 또는 타사제품)		신청 제품
적용기술 인증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주)

1.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성능인증은 수반된 기술 반드시 포함)을 모두기재
2.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3. 주요구성은 주요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
4.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5.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6. CD에 파일명을 회사명.hwp로 하여 별도 제출

[별지 제1호의 15서식(제4조제6항)]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1 . .

약 정 인

주 소 : _____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주 소 : _____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신기술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 16서식 (제4조제2항)］

해외 진출 실적

수출실적 년 월 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신청 시 제출서류>

-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 시 해외 수출제품 실적으로 인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 신용장, 수출신고서 등에 증빙제품 품명, 모델번호 등의 일치여부로 판단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을 기재하고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수출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우수조달물품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모델명 등 확인)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계약서(Contract sheet), 신용장(LC), 수출신고서 및 The documentary of shipment including invoice,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서, 은행발급 수출내역확인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별지 제1호의 17서식 (제4조제2항)]

신인도 자기 평가표

(일반제품, S/W제품, 가구제품)

1. 회사명(대표자) :
2. 담당부서 및 직위, 담당자 성명 :
3. 전화번호 및 FAX :
4. 자기평가 내역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5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자마크, GH,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5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2점)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또는 INNO-Biz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	(3점)	
소계	(최대8점)	
④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5점)	
⑤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소계	(-8점)	
합계	(최대8점)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의 합계는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신규채용 우수기업'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호의 18서식 (제8조제3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5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자마크, GH,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 콘텐츠대상	(5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2점)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또는 INNO-Biz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	(3점)	
소계	(최대8점)	
④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5점)	
⑤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소계	(-8점)	
합계	(최대8점)	

주1)
1. ①,②,③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8점으로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신규채용 우수기업'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제8조, 제8조2~제8조의3, 제13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 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2호의 1서식 (제7조제5항)]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조달청장 귀하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P)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table>
<tr><td colspan="7">심 사 항 목</td></tr>
<tr><td colspan="7">① 신제품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td></tr>
<tr><td rowspan="5">NEP</td><td colspan="6">ⓐ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td><td>중요기술</td><td>일반기술</td><td>주변기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주)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기술”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3서식 (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T, 신기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table>
<tr><td colspan="7">심 사 항 목</td></tr>
<tr><td colspan="7">① 신기술인증, 품질(성능)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td></tr>
<tr><td rowspan="4">신기술</td><td colspan="6">ⓐ 신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td><td>중요기술</td><td>일반기술</td><td colspan="2">주변기술</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품질
성능</td><td colspan="6">ⓑ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td><td>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td><td colspan="3">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단,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품질인증(성능인증 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4서식 (제8조의3)]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3 녹색인증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table>
<tr><td colspan="6">심 사 항 목</td></tr>
<tr><td colspan="6">① 녹색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td></tr>
<tr><td rowspan="5">녹색
기술
인증</td><td colspan="5">녹색기술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td><td>중요기술</td><td>일반기술</td><td>주변기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② 기술인증(특허)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 rowspan="4">기술
인증
(특허)</td><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td><td>중요기술</td><td>일반기술</td><td>주변기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③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td></tr>
<tr><td rowspan="4">품질
성능</td><td colspan="2">구 분
인증번호</td><td>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td><td>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td><td>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td><td colspan="4"></td></tr>
</table>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인증 및 기술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인증(성능인증 등)은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5서식 (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일반제품 <S/W, 가구제품 제외>)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table>
<tr><th colspan="8">심 사 항 목</th><th>점수</th></tr>
<tr><td rowspan="11">기
술
심
사
(52)</td><td colspan="7">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td><td rowspan="11"></td></tr>
<tr><td rowspan="6">특허
(47점)</td><td colspan="6">ⓐ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
(35~47점)</td><td>중요기술
(23~34점)</td><td>일반기술
(12~22점)</td><td>주변기술
(1~11점)</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실용
신안
(30점)</td><td colspan="6">ⓑ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
(22~30점)</td><td>중요기술
(15~21점)</td><td>일반기술
(8~14점)</td><td>주변기술
(1~7점)</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② 규격심사(－5점)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td><td></td></tr>
<tr><td colspan="7">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①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1. 핵심기술로 평가된 경우 4점 또는 5점
2. 중요기술로 평가된 경우 2점 또는 3점</td><td></td></tr>
</table>

<table>
<tr><td colspan="3">심 사 항 목</td><td>점수</td></tr>
<tr><td rowspan="10">품
질
심
사
(40)</td><td rowspan="9">35점</td><td>④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td><td rowspan="9"></td></tr>
<tr><td>
<table>
<tr><td rowspan="2">구분
인증번호</td><td colspan="3">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td></tr>
<tr><td>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5점)</td><td>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td><td>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1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⑤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td></tr>
<tr><td>5점</td><td>④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품질(성능)인증이
1.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td><td></td></tr>
<tr><td colspan="3">합 계 (배점 92점)</td><td></td></tr>
<tr><td>경제성 효과 분석(5)</td><td colspan="2">자사제품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0~5점)</td><td></td></tr>
</table>

※ 경제성효과심사 : (주)별지 제1호의 8서식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해당된 제품에 대하여 **가점**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6서식 (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table>
<tr><td colspan="7">심 사 항 목</td><td>점수</td></tr>
<tr><td rowspan="13">기
술
심
사
(52)</td><td colspan="6">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td><td rowspan="11"></td></tr>
<tr><td rowspan="6">특허
(47점)</td><td colspan="5">ⓐ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
(35~47점)</td><td>중요기술
(23~34점)</td><td>일반기술
(12~22점)</td><td>주변기술
(1~11점)</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실용
신안
(30점)</td><td colspan="5">ⓑ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
(22~30점)</td><td>중요기술
(15~21점)</td><td>일반기술
(8~14점)</td><td>주변기술
(1~7점)</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② 규격심사(－5점)</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6">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td></tr>
<tr><td colspan="6">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6">①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1. 핵심기술로 평가된 경우 4점 또는 5점
2. 중요기술로 평가된 경우 2점 또는 3점</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심 사 항 목</th><th>점수</th></tr>
<tr><td rowspan="11">품
질
심
사
(40점)</td><td colspan="2">④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td><td rowspan="10"></td></tr>
<tr><td rowspan="2">구분
인증번호</td><td colspan="3">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td></tr>
<tr><td>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1~30점)</td><td>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20점)</td><td>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0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⑤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④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품질(성능)인증이
1.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td></tr>
<tr><td colspan="2">⑥ 신청제품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유지보수성 (1~5점)</td><td></td></tr>
<tr><td colspan="2">합 계 (배점 92점)</td><td></td></tr>
</table>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7서식 (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가구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table>
<tr><th colspan="8">심 사 항 목</th><th>점수</th></tr>
<tr><td rowspan="11">기
술
심
사
(47)</td><td colspan="7">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td><td rowspan="11"></td></tr>
<tr><td rowspan="6">특허
(42점)</td><td colspan="6">ⓐ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
(32~42점)</td><td>중요기술
(21~31점)</td><td>일반기술
(11~20점)</td><td>주변기술
(1~10점)</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실용
신안
(30점)</td><td colspan="6">ⓑ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td></tr>
<tr><td>구 분
인증번호</td><td>핵심기술
(22~30점)</td><td>중요기술
(15~21점)</td><td>일반기술
(8~14점)</td><td>주변기술
(1~7점)</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② 규격심사(－5점)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td><td></td></tr>
<tr><td colspan="7">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①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1. 핵심기술로 평가된 경우 4점 또는 5점
2. 중요기술로 평가된 경우 2점 또는 3점</td><td></td></tr>
<tr><td>디자인
심사⑤</td><td colspan="7">④ 신청제품의 심미성, 사용의 편리성, 환경친화성, 실용성, 보수성(1～5점)</td><td></td></tr>
</table>

<table>
<tr><td colspan="3">심 사 항 목</td><td>점수</td></tr>
<tr><td rowspan="10">품
질
심
사
(40점)</td><td rowspan="9">35점</td><td colspan="3">⑤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td><td rowspan="9"></td></tr>
<tr><td rowspan="2">구분
인증번호</td><td colspan="3">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td></tr>
<tr><td>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5점)</td><td>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td><td>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1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5점</td><td colspan="3">⑥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⑤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품질(성능)인증이
1.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td><td></td></tr>
<tr><td colspan="3">합 계 (배점 92점)</td><td></td></tr>
</table>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8서식 (제8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 품 명 :

○ 업체명 :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의견	①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물품 ( ) ②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 ) ③ 현재는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나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 ) ④ 공공기관 수요가 거의 없으며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 ) ⑤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물품 ( )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기타 의견	

[별지 제2호의 9서식 (제9조제2항)]

1차 심사 통과제품 업체실태 조사서

(조사일자 : 201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table>
<tr><td>품 명</td><td colspan="5"></td></tr>
<tr><td>회 사 명</td><td colspan="3">(대표자 :)</td><td>창업년도</td><td></td></tr>
<tr><td rowspan="2">소 재 지</td><td>본사</td><td colspan="4">☏</td></tr>
<tr><td>공장</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 1년
기준)</td><td rowspan="2">계</td><td rowspan="2">백만원</td><td>민수</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관수</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부 서 별
종업원수</td><td colspan="5">(예시) 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A/S부서 등</td></tr>
<tr><td>공장/생산
시설 현황</td><td colspan="5">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td></tr>
<tr><td>신청제품
생산실태</td><td colspan="5">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td></tr>
<tr><td>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td><td colspan="5"></td></tr>
<tr><td>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시)</td><td colspan="5"></td></tr>
<tr><td>종합의견
및
참고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별표 3 (제13조제1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4	목차(별지 제3호의 4서식)	반드시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3호의 1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제출
7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제출
8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제출
9	○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10	최근 1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목록(별지 제3호의 3서식)	반드시제출
1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의 4서식)	반드시제출
12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반드시제출
13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14	○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반드시제출
1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제출
1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제출
18	우수제품지정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반드시 제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제13조 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3호의 1서식〕

〔목 차〕

1-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표지
1-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1서식) ····· ○
1-3.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의 2서식) ····· ○
1-4 목 차 (별지 제3호의 1서식) ····· ○
1-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 ○
1-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 ○
1-7.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
1-8.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
1-9.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 ○
1-10. 품질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 ○
1-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
1-12.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1-13.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별지 제3호의 3서식) ····· ○
1-14.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의 4서식) ····· ○
1-15. 해외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 ○
1-16. 해외진출 실적 증빙자료 ····· ○

2. 신청기업 정보 ·····
2-1. 사업자등록증 ····· ○
2-2. 직접생산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 ○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
2-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2-5.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 ○
2-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별지 제3호의 2서식 (제13조제1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table>
<tr><td>우수제품명</td><td colspan="5"></td></tr>
<tr><td>우수제품
지정번호</td><td colspan="2"></td><td>우수제품
지정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회사개요</td><td>회사명</td><td colspan="2"></td><td>법인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 -)</td></tr>
<tr><td rowspan="2">행 정
담당자</td><td>직위/성명</td><td></td><td>부 서 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FAX번호</td><td></td></tr>
<tr><td>지정당시
기술인증</td><td colspan="2"></td><td>인증기간</td><td colspan="2"></td></tr>
<tr><td>연장시점
기술인증</td><td colspan="2"></td><td>인증기간</td><td colspan="2"></td></tr>
<tr><td>판매실적</td><td colspan="5">※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판매실적</td></tr>
<tr><td>기간연장
신청사유</td><td colspan="5"></td></tr>
<tr><td>첨부자료</td><td colspan="5">◦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td></tr>
</table>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의3서식 (제13조제2항)]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

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최근 1년(3년)이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별지 제3호의 4서식 (제13조제2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조 달 청
용 도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연장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약내용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물품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표 4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2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 신청서(별지 제4호의 2서식)	
4	목차(별지 제4호의 1서식)	
5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별지 제4호의 3서식)	반드시제출
6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제출
7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제출
8	○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등 ○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의 3항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9	변경된 추가 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제출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제출
11	○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5]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4호의 1서식 (제14조제2항)]

〔목 차〕

1-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표지

1-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

1-3.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신청서(별지 제4호의 2서식) ····· ○

1-4. 목 차 (별지 제4호의 1서식) ····· ○

1-5.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별지 제4호의 3서식) ····· ○

1-6.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

1-7.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

1-8.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

1-9. 품질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 ○

1-10.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

1-11.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1-12.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 ○

2. 신청기업 정보 ·····

2-1. 사업자등록증 ····· ○

2-2.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

2-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2-5.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 ○

2-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별지 제4호의 2서식 (제14조제7항)]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 신청서

<table>
<tr><td>우수제품명</td><td colspan="5"></td></tr>
<tr><td>우수제품
지정번호</td><td colspan="2"></td><td>우수제품
지정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회사개요</td><td>회사명</td><td colspan="2"></td><td>법인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 -)</td></tr>
<tr><td rowspan="2">행 정
담당자</td><td>직위/성명</td><td></td><td>부 서 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FAX번호</td><td></td></tr>
<tr><td>지정당시
기술인증</td><td colspan="2"></td><td>인증기간</td><td colspan="2"></td></tr>
<tr><td>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td><td colspan="5"></td></tr>
<tr><td>추가 규격
(모델)에
적용된 기술</td><td colspan="5"></td></tr>
<tr><td>규격(모델)
추가 사유</td><td colspan="5"></td></tr>
<tr><td>첨부자료</td><td colspan="5">◦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1부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1부[당초 지정규격서에 추가규격(모델)에대한 제원표(규격추가내용)등을 붙임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td></tr>
</table>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의 3서식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비교표

구 분	우수제품지정제품	추가요청규격
품 명		
적용기술		
규격(모델)	※ 당초 규격(모델) 기재	※ 당초 규격(모델)과 추가요청 규격(모델) 함께 기재
용 도		
주요 재질		
기 타	※ 규격추가 시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을 적시	
규격서 변경내용	※ 당초 규격 내용	※ 변경 규격 내용

[별지 제4호의 4서식(제14조제3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우수제품명			
업체명			
지정 시 기술인증			
규격추가 사유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기 지정 규격(모델)		추가요청 규격(모델)	
2. 심사 내용			
1) 품명과 용도 동일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적용기술의 동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규격(모델)이 유사한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4) 품질과 기능이 동등 또는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의 1서식(제6조제1항, 제15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 관련의견서(이의서)

<table>
<tr><td colspan="2">의견(이의) 대상</td><td>제품명</td><td colspan="2"></td><td>회사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업체명</td><td colspan="6">(대표자 :)</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d>FAX번호</td><td></td></tr>
<tr><td>성 명</td><td></td><td>부서명</td><td></td><td>직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td></tr>
<tr><td colspan="8">【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td></tr>
<tr><td colspan="8">【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td></tr>
<tr><td colspan="8">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6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5호의 2서식(제15조제3항)]

우수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우수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 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의 3서식 (제11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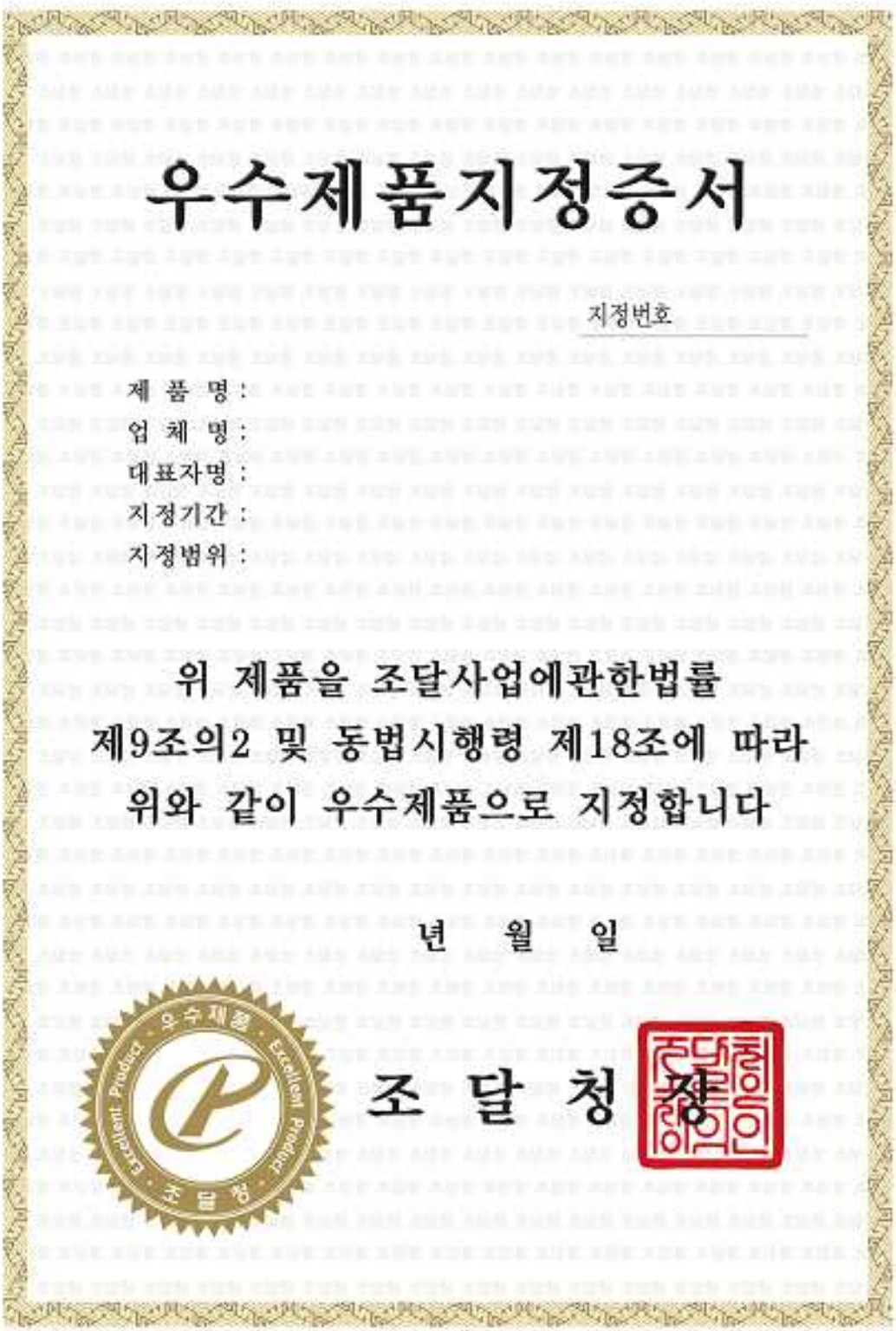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번호

제 품 명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위 제품을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 반드시 유효여부 확인 요망

Certificate of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Product

Company

Representative

Validity of Certificate

Certificate numbe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was designated as an Excellent Produ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Administrator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5호의 4서식 (제26조제1항)]

<table>
<tr><td colspan="3">
기본형</td></tr>
<tr><td>
활용형－2색표현A</td><td>
활용형－2색표현B</td><td>
활용형－2색표현C</td></tr>
<tr><td>
활용형－검정색표현</td><td>
활용형－금색표현</td><td>
활용형－단색표현A</td></tr>
<tr><td>
활용형－단색표현B</td><td>
활용형－무채색표현</td><td>
활용형－은색표현</td></tr>
</table>

[별지 제6호의 1서식 (제16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구매사업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연간(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품 명	규 격	수 량	희망단가	금 액	비 고

*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1 부

2. 규격서 1부(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확정된 규격과 동일한 규격)

3. 가격자료(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서 등)

4. 관계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형식등록, 안정인증서, KS인증 1 부(해당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

5. 각종 기술인증서 사본(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첨부) 1부.

6. 직접생산자 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부. 끝.

201 .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6호의 2서식 (제24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구매사업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재교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재교부사유	변경내용

붙임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1부
5.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연 락 처 :
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주.
1) 재교부사유 :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지정증서분실, 규격추가
2) 변경내용이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포함),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신인도 기타 품질인증 포함)을 새로운 권리자로 명의변경 후 제출할 것
3) 일반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외
4)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1~5번), 나머지 사유에 의한 신청(1~4번)

[별표 5 (제21조, 제23조)]

우수제품 만족도 평가등급

1. 평가등급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0점 이상
우수(Green)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30	15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 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5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건	30	30
만족도	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20	5
	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점		5
	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점		5
	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5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일	20	2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30	15	15점: 100% 14점: 100% 미만 ~ 95% 이상 13점: 95% 미만 ~ 90% 이상 12점: 90% 미만 ~ 85% 이상 11점: 85% 미만 ~ 80% 이상 10점: 80% 미만 ~ 75% 이상 9점: 75% 미만 ~ 70% 이상 8점: 70% 미만 ~ 65% 이상 7점: 65% 미만 ~ 60% 이상 6점: 6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50% 이상 4점: 50% 미만 ~ 45% 이상 3점: 45% 미만 ~ 40% 이상 2점: 4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균 납기지체일수	일		15	15점: 1일 이내 14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3점: 3일 초과 ~ 5일 이내 12점: 5일 초과 ~ 7일 이내 11점: 7일 초과 ~ 9일 이내 10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9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8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7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6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5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4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3점: 30일 초과	※기본점수: 3점 부여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 처리 요청건수	건	30	30	30점: 0건 25점: 2건 이내 ~ 0건 초과 2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15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5점: 8건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기본점수: 5점 부여
만족도	가격 만족도	점	20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품질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종합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일	20	20	20점: 3일 이내 18점: 3일 초과 ~ 6일 이내 1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14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12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10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8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6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 평가일로부터 최근 1년 실적

2) 평점처리

- 평점 최소단위 다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처리

Ⅳ. 우수제품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13.3.1부터 적용)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계약상대자는 조달요청서 접수 후 물품납품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였을 경우 조달청은 해당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5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도서개발촉진법)의 경우 해상운임(최단거리)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납품요구의 취소 및 정정)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억원 %, **2단계**: 억원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정부휘장	개인용도로 사용금지

② 중·대형 물품용

정부휘장	이 물품은 정부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사후관리서비스 관련사항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에 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 사후관리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신고 전화번호 : ☎ 070-4056-

나. 계약상대자 A/S 신고 :

다. 제품 보증기간(A/S 책임기간) :

라. 제품 사용관리상 유의사항

② 물품표면에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유인물로 제작 배포한다.

제12조(A/S 실시 및 A/S결과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제품보증기간내에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A/S실시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명, A/S요청 접수일시, 조치일시, 조치내용 등

나. 수요기관의 A/S실시 확인서

제13조(리콜제)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하자로 A/S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콜하여야 한다.

② 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심의 위원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가.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나.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다.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라. 기타 사유로 제품이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난 제품은 제외한다.

③ 리콜 요청기간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기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선정은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계약수량의 100% 초과 110%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에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반조치를 취한 후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단,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체결 후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등 제재조치)

계약체결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납품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6. 수의계약사유 소멸,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납품 후 하자 발생,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때

제16조 (검사 등)

① 검사 및 검수는 수요기관에서 행한다.

②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생산공장이나 납품장소에서 언제든지 품질시험(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조달물자 기동점검'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은 계약체결된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기동점검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은 특히 납품과정에서 품질 등에 문제(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기동점검을 포함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해당 제품 정보란 등에 기재하여 나라장터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수제품담당부서(조달청에서 교육실시를 의뢰한 위탁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후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0조(제품의 규격변경 등)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타 제조사의 제품을 자신의 제조품으로 납품하거나 외주가공계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부도, 파산,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12. 우수제품 지정효력이 정지된 경우
13. 제2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5.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6.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2조의 2(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함과 동시에 즉시 거래정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나.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가 수요기관의 구매물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것

다. 긴급하게 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명백하여 거래정지조치가 급박하다고 판단될 것

2. 부도, 파산,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함과 동시에 즉시 거래정지할 수 있다.

②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정지 기간은 최종 확정된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후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정지 사유 없음으로 판명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 3(거래정지 유효기간)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제22조의 4(거래정지의 효력)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본 계약의 물품과 관련하여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부칙<2013.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 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제2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2.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3.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4.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 제재 종료 후 계약기간내에 재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7.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8. 제2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9. 제2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12월	계약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6월	계약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3월	계약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1월	계약
10. 제2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규격서의 기준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납품한 자	6월	계약
나. 사전점검 결과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제조한 자		
(1) 1차 점검 시 제품의 규격이 미달된 경우	경고	-
(2) 1차 점검 결과 규격미달로 재점검 시 다시 규격이 미달된 경우	6월	계약
11. 제2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12. 제2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계약
☞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13. 제2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효력정지 기간	품명
14. 제2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가. 7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월	품명
☞ 2차 위반	3월	품명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시까지 거래정지		
15. 제22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시정완료 시까지	품명
16. 제2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부정당제 재기간	계약
17. 제2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비고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